

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3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건축을 도급받아 건축한 후 공사비 대신 전용면적 84.9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73세대를 대물변제 받으면서 먼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보존등기된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대물변제 받아 취득한 것이라면 상기 조례에 의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한 것이다. 동 조례에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10년~50년)목적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인이 대물변제 받은 공동주택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10년~50년 장기 임대)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동법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규정의 배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임대개시일부터 3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상기 조례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 것입니다. (세정-2925, 2005. 9. 28)

22. 대도시내 첨단업종 영위법인 등록세 종과세 여부

[질 의]

대도시에서 자동차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지 5년 미만인 법인이 같은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 미만의 자동차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소유의 대도시내 모든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등록세 종과세 해당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33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의 법인 설립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종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2 제7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은 대도시내 법인 등록세 종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공장업종 분류번호 34301)등 자동차생산 관련 업종(34302, 34303, 34121, 34122)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단업종으로서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 미만의 상기 자동차생산 관련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 미만의 법인이 운영하는 동종의 공장(공장업종 분류번호 34121, 34301, 34302, 34303)을 자산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라면 상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종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세정-2850, 2005. 9. 26)